

옴긴이 서문

외국산 담배가 수입된다는 기사가 일간지의 머리 기사를 장식한 적이 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겠지만, 1986년까지만 해도 ‘양담배’를 피다가 적발 되면 이른바 반사회 시범으로 구속되는 신세를 면하기 어려웠다. 입담배 농가의 피해를 우려했던 야당으로부터 ‘경악을 금치 못할 살농 정책’이란 비판을 받았던 당시의 담배 시장 개방 조치는 1986년 7월 21일 타결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의 통상협상의 결과였다. 이 한미 통상협상은 담배보다 훨씬 더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제도 변화를 동반했는데, 바로 의약품 특허 제도의 도입이다.

최근 신종 인플루엔자의 대유행이 우려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의약품 특허 제도는 정작 필요한 의약품의 공급을 가로막아 국민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신종 인플루엔자에 효과가 있다는 항바이러스제의 생산 기술을 확보한 국내 제약사가 10개 이상이나 뭍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필요한 양의 치료약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는 치료약의 생산과 공급을 미국 제약사인 ‘길리아드’가 독점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독점은 바로 의약품 특허권을 통해 제도적으로 보장된다.

1986년의 한미 통상협상은 의약품 특허 제도만 아니라 지재권 제도 전반에 대대적인 변화를 몰고 왔다. 지재권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한국의 지재권 제도와 모든 법률들이 1986년 12월 31일자로 전면 개정된 사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과 특허권의 보호 기간을 늘리고, 음반 제작

자에게 저작권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하며,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특별법을 만들고, 특허권의 남용을 제재할 권한을 축소하며, 지재권 침해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한 것들은 모두 이때부터다. 1980년대 중반에 한국의 지재권 법률들이 모조리 개정된 이 현상은, 이 책의 서장에서 칠레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것처럼, 1995년 세계무역기구에서 채택된 지재권에 관한 국제협정(‘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 Agreement), 이하 ‘트립스 협정’)의 전초전이였다.

1995년에 발효된 트립스 협정은 1980년대부터 시작된 지재권 강화 현상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했다. 트립스 협정이 지재권 강화 현상의 새로운 국면이라고 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그동안 지재권의 세부 사안별로 흩어져 있던 국제조약들을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인 협정이 전통적으로 지재권과 관계가 없던 세계무역기구의 우산아래로 들어갔다. 따라서 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이 되려면 포괄적인 지재권 협정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만 한다. 둘째, 지재권을 무역과 연계했다. 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무역 자유화에 역행하는 방향(즉, 지재권 보호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는 지재권 제도를 변경할 수 없게 되었으며, 지재권은 이제 경제적 이윤과 투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변모하기 시작한다. 셋째, 지재권 협정의 이행 여부가 세계무역기구의 감시 체제로 편입되면서 지재권 협정의 이행을 강제할 강력한 수단으로 무역 보복 조치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세 가지 특징 때문에 트립스 협정은 이전과는 달리 이른바 전 지구적 차원의 지재권 체제, 그것도 무역 보복이라는 강력한 ‘이빨’을 가진 체제로 작동하게 된다.

트립스 협정이 새로운 차원의 지재권 규범을 만들었지만 이것이 지재권

강화의 완결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트립스 협정이 자국에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면서도 결국 협정 체결에 동의를 했던 개도국들은 트립스 협정이 지적권 강화의 완결판이기를 기대했고 그래서 트립스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지적권 보호 기준을 ‘꼭대기’로 생각했지만, 지적권 강화를 추진해 온 미국이나 유럽연합은 트립스 협정을 ‘밑바닥’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연합은 트립스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자유무역협정(FTA)이란 이름의 쌍무협정이나 지역협정을 통해 지적권의 보호 기준을 더욱 강화해 오고 있다. 이처럼 지적권이 전 세계적 차원의 제도로 강화되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자본주의의 구조적 변화가 초국적 자본가 계급의 경제적 권력을 강화했고, 이들은 정치적·경제적으로 가장 힘있는 국가들과 연합해 자기들에게 유리한 지구적 차원의 규범을 만들었다는 구조 중심의 거시적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지적권 강화 현상에 대한 이러한 구조론적 설명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이 책의 요지이다. 수전 셸 교수는 구조론적 설명의 한계를 드러내기 위해 트립스 협정을 세계무역기구의 다른 협정들과 비교한다. 서비스에 관한 일반 협정(GATS)과 무역 관련 투자 조치(TRIMS) 역시 트립스 협정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의 구조적 변화라는 동일한 물질적 조건에 놓여 있었고 트립스 협정을 추진했던 국가/자본가 계급과 동일한 행위자에 의해 추진되었지만 그 결과는 트립스 협정과 매우 다르다는 것이다. 또 트립스 협정이 체결된 바로 다음 해에 추진되었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저작권 조약’ 역시 구조론적 설명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된다. 셸 교수는 구조 변화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해석론은 서비스에 관한 일반 협정이나 무역 관

런 투자 조치, 그리고 'WIPO 저작권 조약과 트립스 협정의 차이점, 그리고 이러한 차이점 이면의 정치적 과정을 포착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행위자와 이 행위자가 구조와 상호작용하는 동적인 과정을 분석해야만 지재권 강화 현상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 셀 교수는 트립스 협정의 성립 과정과 그 성공적인 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12명의 초국적 기업 대표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계 다국적 기업 대표 12명은 지재권위원회(IPC)라는 조직을 만들어 지재권 강화를 위한 전방위 로비를 벌이기 시작한다. 이때가 1986년, 그러니까 트립스 협정이 체결되기 10년 전이다. 이들의 10년에 걸친 끈질긴 노력이 트립스 협정의 성립에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그렇다고 이 책의 저자가 12명의 행위자 중심의 미시적 접근을 지지하지도 않는다. 행위자 중심의 미시적 접근 역시 구조와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맥락과 구조를 무시하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구조화된 행위자(structured agency)', 다시 말하면 구조에 배태되어 있는 행위자란 개념이 등장한다. 구조화된 행위자 개념은 2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행위자는 구조적 요인에 의해 상태 조절된다. 즉, 행위자의 이해가 구조와 불일치하게 되면 행위자는 자신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일련의 행동을 취하는 구조적 상태 조절을 받는다. 둘째, 행위자는 스스로 만들지 않은 맥락에서 구조와 상호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를 트립스 협정을 중심으로 설명해보자. 트립스 협정 이전의 구 지재권 체제에서 모방 기술의 발달은 초국적 기업 행위자들이 스스로 만들어 내지 않았던 맥락이며, 초국적 기업 행위자들은 구 지재권 체제를 바꾸려는 구조

적 상태 조절을 받는다. 이처럼 행위자를 구조에 배태된 상태의 행위자로 파악하면, 어떤 맥락에서 누가 중요한 행위자인지, 국내·국제적 맥락에서 어느 행위자의 선호가 더 중요한지를 파악할 수 있다.

구조와 행위자의 상호작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이다. 제도가 구조와 행위자를 연결하는 방식은 이렇다. 구조는 제도를 바꾸고 새로운 행위자를 만든다. 이 새로운 행위자는 다시 제도를 바꾸고 새로운 구조를 만든다. 구조화된 행위자의 산물인 트립스 협정은 이러한 상호 작용을 통해 탄생했다. 여기서 제도란 법률이나 국가 기구 그리고 국제 기구를 말한다. 그래서 이 책은 트립스 협정의 성립을 이끈 구조와 행위자의 상호 작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두 개의 장(3, 4장)을 할애하여 미국의 제도 변화를 추적한다. 그 다음, 국제적 차원에서 일어난 구조와 행위자의 상호 작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국적 기업 행위자들이 국제 기구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이들이 유럽연합과 일본의 사적 부문 행위자들을 어떻게 결집했고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한다(5장).

트립스 협정으로 대표되는 지구적 지적권 규범의 성립 과정은 이 책에서 다루는 이야기의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는 트립스 이후에 등장한 지적권 최대주의에 대한 저항이다. 트립스 협정은 이제 새로운 구조가 되면서 지적권 최대주의에 저항하는 새로운 행위자들을 만들어 냈다. 에이즈 치료약을 중심으로 시작된 의약품 접근권 운동의 활동가들, 종자 특허와 유전자 특허를 '생명 해적질'이라고 비판하는 농민들과 소비자 단체들, 저작권의 과다한 확장에 반기를 드는 공정 이용 지지자들은 트립스 협정이 만들어 낸 새로운 행위자들이다.

이들 역시 트립스 협정을 기획했던 다국적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구조화된 행위자’로서, 이들이 구조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에 따라 트립스에 대한 저항의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트립스를 성립시킨 행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트립스에 저항하는 행위자 역시 트립스가 초래한 제약을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정치적 기회를 포착하고 이를 활용하여 지재권 담론에 저항하는 포괄적인 의제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지재권 제도의 변혁을 꿈꾸는 독자라면 이 책의 6, 7장과 한국어판 보론을 정독하기를 권한다.

지재권과 관련된 사회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이러저런 활동을 하던 중 이 책을 접한 지가 벌써 5년이 넘었다. 당시 트립스 협정을 분석하고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이 책은 트립스 협정의 성립 과정은 물론 한국 사회의 지재권 제도가 그동안 겪은 변화 과정을 분석하는 데에 훌륭한 방법론을 제시해 주었다. 이 책의 또 다른 매력은 앞으로 지재권 제도가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을 넘어서 지재권 제도가 어떻게 변모해야 할 것인지를 ‘기획’하는 데에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웁긴이 서문의 첫머리에서 얘기했던 한미 통상협상은 이제 20년의 시간을 넘어 한미 FTA로 재현되고 있다. 20년 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한미 통상협상은 통상 보복을 무기로 한 미국의 강압에 의해 시작되었던 반면 한미 FTA는 한국 정부의 요구로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이른바 ‘외부 충격에 의한 구조 조정’ 프로그램으로 시작된 한미 FTA는 유럽연합과의 FTA로 이어지고 있다. 지재권 보호의 확대·강화를 추진하는 양대 축인 미국, 유럽연합과 동시다발로 FTA를 체결하면서 이들의 제도가 한국 사회에 그대로 이식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지재권 보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인데, 이처럼 단기간의 급격한 제도 변화가 몰고 올 충격이 너무 클 경우 구조조정은 커녕 내부 붕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FTA를 통한 지재권 최대주의를 자발적으로 수입하는 현상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지재권 제도 변화는 미국이나 유럽연합의 통상압력과 이에 대한 한국의 일방적인 양보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다. 미국계 다국적 기업의 사적 이해가 국가간의 협상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굴절되어 한국 사회에 투영되는 과정에서 제도의 수입뿐만 아니라 이념을 수입을 동반했고, 이는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행위자를 만들어 냈다.

한국 사회의 새로운 행위자는 미국이나 유럽연합과는 달리 사적 부문 행위자가 아니라 지재권 업무와 직접 관련된 행정 관료 집단이다. 이들은 사적 부문 행위자들과 달리 정책을 집행할 권한과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와 행위자를 연결하는 핵심 고리인 제도를 강력하게 장악하고 있다. 또한 행정 관료들은 전문성과 정보를 독점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지재권 제도는 행정 관료라는 새로운 행위자들에 의한 내부자 거버넌스(internal governance)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아직까지 이들을 견제할 저항 세력은 존재하지 않거나 태동기에 있다. 저항 세력이 조직적 행위자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인지는 구조적 제약을 극복할 대항 의제를 이들이 어떻게 제시하느냐, 구조의 본질적인 변화는 물론 미시적인 변화, 권력과 자원의 불평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번역하는 동안 도움을 준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자 한다. 누구보다 꼼꼼하게 번역문을 읽어보고 조언을 해 준 동아대학교의 남찬섭 교수와 한신대 최형익 교수를 빼 놓을 수 없다. 그리고 세세한 표현

까지 하나하나 고치고 다듬어주면서 번역이 또 하나의 창작임을 새삼 일깨워준 안중철 편집장과 성지희 편집자의 수고와 노력이 없었더라면 이 책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출판사로서는 하기 어려운 결정이었을 텐데도 무단 복제를 일체 금지하는 관행과는 달리 교육 목적이나 비영리 목적의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권을 행사하지 말자는 윤킨이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준 출판사의 결정에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